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6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황 희·안규백·한민수

강선우 • 이용선 • 어기구

박 정・이훈기・차지호

부승찬・조 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 제11조에는 학교 등의 설립・경영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의무교 육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 기반이며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 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특히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교 부족 문제로 인한학교시설 신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이 예산 등의 문제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학교시설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예외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용지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4.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학교용지인 토지에 한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	
여 ·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
	이 학교용지인 토지에 한정하
	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비특
	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u>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u>
	<u>여하는 경우</u>
② <u>제1항제1호</u> 에 따라 행정재	② <u>제1항제1호 및 제4호</u>

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	
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	
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	
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